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와부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9년07월2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손**	손** 1961-03-0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재등록
손**	육** 1962-06-20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재등록
손**	손** 1989-08-18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재등록
손**	손** 1992-02-16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재등록
백**	백** 1974-10-17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재등록
송**	송** 1981-08-0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번안길	재등록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담당자 : 문은상 문의전화 : 031-590-5431)

2019년 07월 01일

와부읍장 인

